

<p>長은 豫算案을 會計年度 開始 50日 前까지 市議會에 提出하도록 하는 內容입니다.</p> <p>우리 委員會는 94年 3月 16日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과 94年 12月 22日 改正公布된 地方財政法에 따라 同 條例의 關聯規定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同 改正條例案을 出席委員 滿場一致로 原案 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보다 구체적인 審査內容은 配布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시고,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白昌鉉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.</p> <p>존경하는 議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	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제1기분 자동차세분부터 적용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중 “9월 10일”을 “8월 10일”로 한다.</p> <p>제3조중 “9월 30일”을 “8월 31일”로 한다.</p> <p>제4조중 “40일”을 “50일”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7조제1항중 “건축한”을 “건축하거나 승계 취득(임대사업자에 한한다)한”으로 한다.</p> <p>제18조제1항중 “건설부장관”을 “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</p> <p>부칙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4조(경과조치)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이 2,000cc를 초과하더라도 2,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동조동항을 적용한다.</p>	<p>4. 서울特別市環境保全型農業育成支援基金設置 및運用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>5.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>(15時 31分)</p> <p>○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環境保全型農業育成支援基金設置 및運用條例案,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, 이상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生活環境委員會 權赫柱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一括해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權赫柱議員 生活環境委員會 權赫柱議員입니다.</p> <p>존경하는 議長님,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</p> <p>오늘 本議員이 우리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査 議決한 서울特別市環境保全型農業育成支援基金設置 및運用條例案과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.</p> <p>오늘 本會議에 上程된 2件의 條例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4月 12日과</p>